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2749호

제출년월일 : 2022년 6월 3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1. 제안이유

「도서관법」에 따라 용어 등 관련 규정과 도서의 대출 관련 사항을 현행에 맞게 개정하고, 도서관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구립도서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도서관법」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함.(안 제2조, 제4조, 제5조, 제14조)

나. 도서관 운영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등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안 제9조, 제11조)

다. 자료의 대출에 관한 사항을 현행 도서관 운영에 맞게 개정함.(안 제15조)

라. 도서관 운영·관리 위탁에 관한 사항을 민간위탁 또는 양천구 산하기관의 대행으로 구분하여 정함.(안 제2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발췌문 별첨(참조)

1)「도서관법」제2조, 제9조, 제27조, 제28조

2)「지방공기업법」제2조,「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

3)「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2조

4)「서울특별시 양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2. 4.29~2022. 5.19) 결과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결과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

4) 성별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

서울특별시 양천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에서 위임한 사항과”를 “에 따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이란”을 “이란 「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 따라”로 하고 “도서관으로 자료를 수집、정리、분석、보존하여 공중에게 제공함으로써 정보이용、조사、연구、학습、교양、평생교육 등에 이바지하는 시설”을 “공공도서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제3호, 제5호, 제6호를 각각 삭제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도서관자료”란 「도서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제3조 중 “구청장은”을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구민에게”를 “「도서관법」 제27조에 따라 구민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구”를 “양천구”로 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6조제1항 중 “도서관의 시책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표 도서관”을 “도서관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표도서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표 도서

관”을 “제1항에 따른 대표도서관(이하 “대표도서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양천구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서관운영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5인”을 “15명”으로, “행정지원국장”을 “도서관업무 담당 국장”으로 각각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담당부서장, 문화체육과장, 기획예산과장”을 “담당 부서장”으로, “위촉한다”를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6항제2호 중 “자료”를 “도서관자료”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괸한”을 “관한”으로 한다.

1.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위원회의 안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원회 활동 중에 비리 등 부패에 연루되었거나 사회통념상 해촉 될 만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4. 직무태만, 장기불참,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11조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여 심의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13조제3항 중 “별표1”을 “별표 1”로 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대출) 제13조에 따라 등록한 회원이 도서관자료를 대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원카드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학술조사연구, 공무수행 등 공적인 연구목적으로 소속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명서를 소지한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6조제1항 중 “대출자료”를 “제15조에 따라 대출한 도서관자료의”로 하고, “다만, 대출자료”를 “이 경우 대출한 도서관자료”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도서관 자료”를 “도서관자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료”를 “도서관자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도서관 자료”를 “도서관자료”로, “별표2”를 “별표 2”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도서관 자료”를 “도서관자료”로 한다.

제3장의 제목 “민간위탁”을 “도서관 운영·관리 위탁”으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민간위탁 등)”을 “(운영·관리의 위탁)”으로 한다.
제24조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④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양천구 산하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사·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이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8조를 삭제한다.

제32조의 제목 “(지식정보취약계층의 독서진흥)”을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독서진흥)”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지식정보취약계층”을 “지식정보 취약계층”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경우”를 “경우 서울특별시 양천구”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작은도서관 진흥법」, 「독서문화진흥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서울특별시 양천구가 설치하는 도서관의 운영과 독서문화진흥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에 따라** ---------- ----------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서관"이란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양천구"라 한다)가 설치·운영하는 도서관으로 자료를 수집·정리·분석·보존하여 공중에게 제공함으로써 정보이용·조사·연구·학습·교양·평생교육 등에 이바지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작은 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2조 제4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대표 도서관"이란 도서관(이하 작은 도서관을 포함 한다) 시책을 총괄적으로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특	**제2조(정의)** ---------- ----------. 1. ------**이란 「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 따라** ---------- ---------- **공공도서관**-- ----------. **<삭 제>** **<삭 제>**

현 행	개 정 안
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4. "도서관 자료"(이하"자료"라 한다)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도서를 포함한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모든 자료를 말한다.	4. **"도서관자료"란 「도서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5. "대출자료"란 이용자가 도서관 밖으로 대출할 수 있는 자료를 말한다.	**<삭 제>**
6. "자료정리 비용"이란 이용자가 대출 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 변상이나 원상회복 등의 조치로 도서관 자료로 다시 보관되기까지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삭 제>**
제3조(독서진흥시책의 마련) 구청장은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독서진흥과 각 분야의 지식 정보의 제공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독서진흥시책의 마련)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 ---------- ---------- ----------.

현 행	개 정 안
제4조(도서관의 설립 육성 등) ① 구청장은 구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독서의 진흥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구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도서관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1. 구 본청의 청사 내 2. ~ 3. (생 략)	**제4조(도서관의 설립 육성 등)** ① ---- **「도서관법」 제27조에 따라 구민에게** ----------. ② ----------. 1. **양천구** -------- 2. ~ 3. (현행과 같음)
제5조(도서관의 기능) 도서관이 수행하여야 할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공중에 이용 제공 2. 공중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열람·대출 3. 독서관련 프로그램 및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4. 다른 도서관과 긴밀한 협력 및 도서관 자료의 상호대차 5. 지역 특성에 따른 분관 등의 지정 운영 6. 그 밖에 도서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삭 제>**
제6조(대표도서관 지정 등) ① 구청	**제6조(대표도서관 지정 등)** ① ------

현 행	개 정 안
장은 도서관의 시책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표 도서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대표 도서관에는 사서직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을 두며 관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도서관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생 략)	--- **도서관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표도서관**----------. ② **제1항에 따른 대표도서관(이하 "대표도서관"이라 한다)**---------- ---------- ---------- ----------. ③ (현행과 같음)
제9조(운영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각종 문화시설과 긴밀히 협조하기 위하여 대표도서관에 양천구 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관장으로 하며 간사는 대표도서관 직원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도서관업무 담당부서장, 문화체육과장, 기획예산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제9조(운영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 ---------- ----------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서관운영위원회**----------. ② ---------- -- **15명** ---------- ---- **도서관업무 담당 국장**-------- ---------- ----------. ③ ---------- **담당 부서장**---------- ---------- ----------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현 행	개 정 안
1. 양천구의원	1.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 3. (생 략)	2. ~ 3. (현행과 같음)
④ ~ ⑤ (생 략)	④ ~ ⑤ (현행과 같음)
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⑥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자료의 선정·수집·열람 및 대출 등에 관한 사항	2. **도서관자료**----------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제9조에 따른 운영위원회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① 위원은 위원회의 안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③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한 때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 법**

현 행	개 정 안
3.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4.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치는 때	**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 설>	**제11조의2(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원회 활동 중에 비리 등 부패**

현 행	개 정 안
	에 연루되었거나 사회통념상 해촉 될 만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4. 직무태만, 장기불참,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11조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여 심의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13조(회원 등록 등) ① ~ ② (생략) ③ 제2항에 따른 등록 회원에게는 회원카드를 발급하고 발급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제할 수 있다. 1. ~ 5. (생 략) ④ (생 략)	**제13조(회원 등록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별표 1** ----------. 1. ~ 5.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14조(기증·기부) 도서관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서, 금전 그 밖의 재산을 도서관에 기증·기부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삭 제>**

현 행	개 정 안
법률」에도 불구하고 도서관법 제9조에 따라 이를 접수할 수 있다.	
제15조(대출) ① 제13조에 따라 등록한 회원이 도서관 자료를 대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원카드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학술조사연구, 공무수행 등 공적인 연구목적으로 소속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명서를 소지한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자료대출은 도서관별로 3권 이내로 한다. 단, 최대 9권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대출기간은 10일 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하여 7일간 연장할 수 있다.	**제15조(대출) 제13조에 따라 등록한 회원이 도서관자료를 대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원카드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학술조사연구, 공무수행 등 공적인 연구목적으로 소속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명서를 소지한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6조(대출제한) ① 관장은 대출자료 반납지연, 자료의 훼손·망실 등이 있는 도서관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자료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대출자료 반납을 지연한 경우에는 지연한 일수만큼 제한하고, 자료를 훼손·망실한 경우의 대출제한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② (생 략)	**제16조(대출제한)** ① ----- **제15조에 따라 대출한 도서관자료의** ----------. **이 경우 대출한 도서관자료** ----------. ②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자료의 복사) ① 도서관 자료의 복사는 도서관에 소장된 자료에 한정하며, 복사의 범위는 「저작권법」에 따른다. ② 자료의 출력은 도서관에서의 원문 데이터베이스 열람, 인터넷 정보검색, 문서 편집, 스캐너 작업 등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과정에서 프린터로 출력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관장은 이용자가 도서관 자료를 복사 또는 출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 비용을 징수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은 별표2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2. (생 략)	**제18조(자료의 복사)** ① **도서관자료**----------. ② **도서관자료**----------. ③ ---------- **도서관자료**---------- **별표 2**----------. 1. ~ 2. (현행과 같음)
제19조(자료의 변상) ① 도서관 자료를 망실 또는 훼손·분실하였을 경우에는 동일한 자료로 변상하고 동일한 자료로 변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제19조(자료의 변상)** ① **도서관자료**----------. ② ~ ④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3장 민간위탁	**제3장 도서관 운영·관리 위탁**
제24조(민간위탁 등) ① (생 략)	**제24조(운영·관리의 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서관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이하"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결정하며 수탁자 선정과 관련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양천구에서 설립한 공단이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양천구 산하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사·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이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2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민간위탁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삭 제>**
제32조(지식정보취약계층의 독서진	**제32조(지식정보 취약계층의 독서진**

현 행	개 정 안
흥) 구청장은 도서관법 시행령 제21조에서 규정한 지식정보취약계층의 독서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그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흥)** ---------- **지식정보 취약계층**----------.
제33조(독서문화진흥센터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독서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독서문화진흥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33조(독서문화진흥센터의 설치·운영)** ① ---------- **경우 서울특별시 양천구** ----------. ② (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

□「도서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도서관자료**"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3. (생 략)

3의2. "지역**대표도서관**"이란 해당 지역의 도서관을 지원·협력하여 지역 내 도서관의 균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의하여 지정 또는 설립된 도서관**을 말한다.

4. "**공공도서관**"이라 함은 공중의 정보이용·독서활동·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교육감이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이하 "공립 공공도서관"이라 한다) 또는 법인(「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단체 및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이하 "사립 공공도서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음 각 목의 시설은 공공도서관의 범주 안에 포함된다.

가. 공중의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으로서 제5조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기준에 미달하는 **작은도서관**

나. ~ 바. (생 략)

5. ~ 11. (생 략)

제9조(금전 등의 기부) ①누구든지 도서관의 설립·시설·도서관자료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을 도서관에 기부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도서관은 제1항에 따른 기부가 있을 때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를 접수할 수 있다.

제27조(설치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육성하여야 한다.

② ~ ③ (생 략)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된 공립 공공도서관은 "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28조(업무) 공공도서관은 정보 및 문화, 교육센터로서 수행하여야 할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공중에 이용 제공
2. 공중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지방행정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5.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도서관자료의 상호대차
6. 지역 특성에 따른 분관 등의 설립 및 육성
7.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이하 "지방직영기업"이라 한다)과 제3장 및 제4장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

1. ~ 10. (생 략)

② ~ ③ (생 략)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출자·출연 기관의 지정·고시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주무기관의 장(관계 법령에 따라 그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출자·출연 기관을 설립한 특별시

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 제2조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출자、출연 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하여 지정하고 고시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하여 지정하고 고시할 수 있다.

1. ~ 2. (생 략)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 규칙에 규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서울특별시 양천구 산하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사·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민간위탁을 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생 략)
2. **구립도서관 운영 사업**
3. ~ 7. (생 략)